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노 동 일 자 리 과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지역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년간의 노하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2)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15조

3)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

4)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

다. 위탁 사무 내용

1)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전반

2)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및 선발관리

3)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

라. 위탁기간 : 2027. 1. ~ 2029. 12. (3년간)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50백만원(시비) ※ 2027년 기준

바.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추진계획 수립 : 일자리경제과-28439(2026.9.30.)호

사. 위탁구분 및 수탁기관 : 신규(수탁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3. 부서의견

- 대상자 접수 및 선별 시 여러 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유사사업 중복 수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제적·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운영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2)「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5조, 제6조, 제15조

3)「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4)「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청년고용, 해외취업, 고졸·대졸채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고령자, 저소득 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구인·구직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해외취업을 위한 국제교류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근로자의 근속 및 지역정착유도를 위한 고용안정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일자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정하여 관련 법인, 단체, 기업, 개인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인구정책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2.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기업체, 근로자 정착 유도 지원
6. 외국인 및 생활인구 확대, 정착 유도 지원
7.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5.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청년일자리 롱런(LONG-RUN) 장려사업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공공위탁 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및 간접관리비 등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출	250	250	250	7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	-	-	-
도 비	-	-	-	-
시 비	250	250	250	750
민 간	-	-	-	-
기 타	-	-	-	-
합 계	250	250	250	750

5.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인건비, 운영비, 간접관리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노동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권가연(☎ 480-621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7년 기준)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합 계	250,000	
인건비	30,000	• 담당자, 단기근로(1~2명) - 담당자 : 1,600천원×10개월 = 16,000천원 - 단기근로 : 1,400천원×10개월 = 14,000천원
사업비	190,000	• 지원금 - 1백만원×190명 = 190,000천원
운영비	10,000	• 국내여비 : 20천원×40일 = 800천원 • 간담회, 사무용품, 기타운영비 등 280천원×10개월 = 2,800천원 • 접수시스템 5,000천원 • 사업 홍보(SNS,홍보물) 1,000천원 • 본인인증 및 문자발송비 : 40천원×10개월 = 400천원
수수료	20,000	• 위탁사업 수수료 : 250,000천원×8% = 20,000천원

소 관 부 서		노동일자리과
입 안 자	과 장	이 호 정
	팀 장	김 소 연
	담 당 자	권 가 연 (480-6217)